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은 기존 건축물의 증축, 대수선 등 인허가 시에 수선 규모에 관계없이 강화된 신축기준에 따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을 받도록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구조안전확인 부담 때문에 기존 건축물의 방화·방수 성능개선 등이 어려워 건축물 안전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기존 건축물의 구조내력 등 변경이 경미한 경우에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정하여 안전관리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동산 거래 시 중개인에 의해 확인·설명되고 건축물 분양광고에 포함되는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건축물 내진능력 정보의 활용성 강화를 위해 국민들이 내진능력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등급제로 개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내진안전을 확인받은 기존 건축물도 내진능력을 공개·활용할 수 있도록 내진능력 산정기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건축물 구조안전확인 간소화 대상 및 방법(안 제58조제2항 등)

- 1) 기존 건축물 증축, 대수선 중 방화·방수·단열 성능개선에 필요하고 구조변경이 없이 가능한 수선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을 신설
- 2) 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수선행위로서 구조부재 등의 변경이 없고 구조내력 증가가 경미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와 구조내력에 관한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구조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서식을 신설

나. 내진능력 산정기준 및 표기방법 개선(안 제60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4항, 별표 13)

- 1) 건축물 내진능력을 현행 수치값 표기(진도 및 최대지반가속도)에서 내진등급(내진특등급, 내진Ⅰ등급, 내진Ⅱ등급)으로 산정하여 표기하도록 개편하고,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인증 여부를 건축물대장에 내진능력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규정
- 2)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신축 건축물 등은 내진설계 시 적용한 중요도계수에 따라 내진능력을 산정하고, 기존 건축물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내진안전을 확인받은 경우에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내진등급을 기재할 수 있도록 별표 13의 내진능력 산정기준 전부를 개정

다.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조제2항제1호 등)

- 1) 건축구조기준 개정에 따른 적용범위 명확화,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일련번호 현행화 및 문장부호 표기 오류 정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건축구조기준”을 “건축구조기준(특수목적 건축기
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또
는 대수선을 하려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
건을 만족하는 경우 주요구조부 등의 변경이 없고 기존 건축물의 구조
내력 변경이 경미함(건축구조기준에 따른 구조내력 증가가 건축물의
신축 당시와 비교하여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을 확
인하여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을 작
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지붕 또는 외벽의 수선·
변경 또는 증설로 인한 증축

가. 방화·방수·단열 등의 성능개선을 위한 지붕 또는 외벽의 수선
· 변경 또는 증설인 경우

나. 건축물의 높이와 건폐율·용적률의 변경이 법 제26조에 따른 허

용오차의 범위 내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인 경우

가. 영 제3조의2 제5호에 해당하는 대수선으로서 방화문 또는 방화
셔터를 설치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의 일부를 수선하는 경우

나. 영 제3조의2 제9호에 해당하는 대수선으로서 건축물의 외벽에
치장벽돌, 중량 석재 등 중량 마감재료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기존 건축물의 증축 또는 대수선으로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60조의2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라”를 “별표 13 제2호가목에 따라”
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한다”를 “하며 내
진능력의 표기방법은 별표 13 제1호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존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산정하여 제3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공
개하려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는 별표 13 제2호나목에 따라 내진능
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 중 “영 제91조의3제1항제5호”를 “영 제91조의3제1항제6호”로 한
다.

별표 11의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의 1란 제1호 중 “청사·외국공관·소
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중요도”를 “청사·외국공관·소방
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 중요도”로 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2항
의 신설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
허가의 신청(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하
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 또는 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60
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존 내진능력의 공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
전의 별표 13에 따라 내진능력을 산정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한 건축
물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이 건축주가 종전에 제출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등을 근
거로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진능력 표기

방법을 정비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생략)	제3조(적용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세부적인 기준은 법 제68조 및 이 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② ----- ----- ----- ----- --.
1. 소규모건축물[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 건축물의 경우: <u>건축구조기준</u>	1. ----- ----- ----- ----- ----- ----- <u>건축구조기준(특수목적 건축 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생략)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주요구조부 등의 변경이 없고 기존 건축물의 구조내력 변경이 경미함(건축구조기준에 따른 구조내력 증가가 건축물의 신축 당시와 비교하여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을 확인하여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지붕 또는 외벽의 수선·변경 또는 증설로 인한 증축

가. 방화·방수·단열 등의 성능개선을 위한 지붕 또는 외벽의 수선·변경 또는 증설인 경우

나. 건축물의 높이와 건폐율·용적률의 변경이 법 제26조에 따른 허용오차의 범위 내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제60조의2(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 ① (생략)

②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을 신청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당하는 대수선인 경우
가. 영 제3조의2 제5호에 해당하는 대수선으로서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를 설치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의 일부를 수선하는 경우

나. 영 제3조의2 제9호에 해당하는 대수선으로서 건축물의 외벽에 치장벽돌, 중량 석재 등 중량 마감재료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기존 건축물의 증축 또는 대수선으로서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60조의2(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별표 13 제2호가목에 따라 ---

한다. 이 경우 별표 13 제2호나 목의 방식으로 내진능력을 산정 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 여야 한다.	----. <후단 삭제>
③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내진능력의 공개는 내진능력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방법으 로 한다.	③ ----- ----- ----- -- 하며 내진능력의 표기방법 은 별표 13 제1호를 따른다.
<신 설>	④ 기존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산정하여 제3항에 정하는 방법 으로 공개하려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는 별표 13 제2호나목에 따라 내진능력을 확인할 수 있 는 증빙자료를 허가권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제61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영 제91조의3제1항제5호에 따 라 건축물의 설계자가 해당 건 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 인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별표 10에 따른 지진구역 I 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 표 11에 따른 중요도가 특에 해	제61조(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영 제91조의3제1항제6호----- ----- ----- ----- ----- ----- ----- -----

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
--------------	--------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3] <개정 2024. 00. 00.>

내진능력 산정 기준(제60조의2 관련)

1. 내진능력 표기방법

내진능력은 [별표 12]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등급 구분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내진성능에 해당하는 내진등급(내진특등급, 내진I등급, 내진II등급)을 표기한다. 이 경우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지진대책법」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아 「지진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4제5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를 제출한 건축물은 아래 표의 예시와 같이 해당 내용을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예시 >

내진I등급으로 산정된 건축물로서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추가로 받은 경우	내진I등급으로 산정된 건축물
내진I등급 (인증)	내진I등급

2. 건축물의 내진능력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가. 제60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 : [별표 12]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중요도계수(I_E)를 적용하여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를 하고 설계대로 시공한 경우 해당 중요도계수에 대응되는 내진등급을 건축물의 내진능력으로 보며, 이 경우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8조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 설계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60조의2 제4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산정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 하려는 건축물 : 다음 각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별표 12] 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에 준하는 내진성능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해당 등급을 건축물의 내진능력으로 본다.

1) 「지진대책법」 제1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 등이 내진보강을 추진한 공공 건축물 : 동법 제1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 내진보강 결과

2) 「지진대책법」 제16조의2 및 해당 조문의 위임에 따라 내진보강을 추진한 민간 건축물 : 「지진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3) 「지진대책법」 제16조의3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한 건축물 : 지진안전시설물 인증결과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받은 건축물: 동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4. 00. 00.>

안전·방화 관련 수선·변경·증설 등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

1. 건축 · 대수선 · 용도변경 개요

공사명							
대지위치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및 유지관리 이력	최초 허가(신고)일	년	월	일			
	최초 사용승인일	년	월	일	경과연수	년	
	최초 사용승인일 이후 변경이력						
	관리점검 현황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점검유형 최근 점검일자 년 월 일					
당해 변경내용	구분	☐ 증축 ☐ 대수선 ☐ 용도변경					
	변경사유	☐ 방화 성능개선 ☐ 방수 성능개선 ☐ 단열 성능개선					
	변경사항	☐ 지붕 ☐ 외벽 마감재료 ☐ 방화문·방화셔터 ☐ 기타 변경사항의 면적·위치 등 세부내용					
	용도변경 사항 (세부용도까지 기재)	층 / 면적 / m²		변경 전 용도		변경 후 용도	

II. 구조안전에 관한 확인사항

공통 확인사항 (필수 작성사항)	일반사항 (변경 전)	주용도		규모	연면적 층수(높이) / (m' m)	
		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 [] 목조 [] 조적조			
		지붕	지붕 형태 : [] 경사지붕 [] 평지붕 지붕 마감재료 : [] RC슬래브 [] 복합자재 [] 금속판 [] 유리 [] 기와 [] 기타()			
	구조내력 변경에 관한 사항	구조부재 변경 : 주요구조부 및 구조부재 등의 변경이 없음을 확인 []				
		설계하중 변경 :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설계하중 변경이 경미함을 확인 [] (1) 수선·변경·중설 등으로 인한 고정하중 : 변경면적(m ²) 하중변경 (kN/m ²) (2) 용도변경 등에 따른 사용하중 등 : 변경면적(m ²) 하중변경 (kN/m ²)				
구조내력 변경 : 각 구조부재의 구조내력 증가가 5% 이내임을 확인 [] 종량 외벽 마감재료의 중설 등이 없음을 확인 []						
증축 확인사항 (해당 시 작성)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허용오차 범위 내인지 여부		
	높이	m	m	2퍼센트 이내(1미터를 초과하지 않음) []		
	용적률	%	%	1퍼센트 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음) []		
대수선 확인사항 (해당 시 작성)				0.5퍼센트 이내(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음) []		
	[] 방화문			중설·해체·수선·변경 [개]		
	[] 방화셔터			중설·해체·수선·변경 [개]		
용도변경 확인사항 (해당 시 작성)	[]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 관련)			중설·해체·수선·변경 [m ²]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등 변동 여부		
	중요도			중요도 및 내진등급 상향이 없음을 확인 []		

「건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
의
의

제출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설계자 (서명 또는 인)

주소:

연락처: